

**【사건번호 2021-036】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보건복지부
- 대상 공공데이터: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데이터

**2. 사건개요**

- 신청인은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가능한 시설물 현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IT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201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의 원시 데이터를 제공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통계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로 제공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3. 사실조사**

**가. 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원시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DB화하여 파일로 보유·관리하고 있음
  - \*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 등
-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과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세조사표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함

< 표1 : 실태조사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개요 >

구분	대분류(세분류)	비고
* 대상시설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근린생활, 문화, 종교, 의료시설 등 20개 세분류),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기숙사) -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이 다름 (“의무”, “권장”, 해당 없음)
** 편의시설	-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차구역 등) -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승강설비 등) -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탈의실 등) -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 실태전수조사 결과는 “표2 실태전수조사표(샘플)”에 따라 대상시설의 각 시설물별 편의시설별 평가한 결과(적정/미흡/미설치)를 DB(파일)\*로 보유·하고 있음
- \* 피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엑셀파일(샘플데이터)에 각 시설물별 382개 항목(컬럼)으로 구분되어 있음

< 표2 : 실태전수조사표(샘플) - 실태전수조사 보고서 부록 >

1. 매개시설				
평가기준	모든 이용자가 해당시설물의 대지경계선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접근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			
1.1 주출입구 접근로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1	해당시설에 주출입구 접근로가 있는지?(모두)			
▶ 1.1.1.1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대상시설 해당 여부	해당 (1)	※ 비해당 (2) (→ 1.2 주차구역 항목부터 시작)		
※ 접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비해당을 선택하며, 1.1.2~1.1.6항목은 모두 적정으로 평가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2	해당건물 내 보도 및 접근로의 바닥재질과 마감상태는 보행 장애인에게 적절한가?(모두)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2.1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마감		물이 묻어도 미끄러지지 않으며 넘어질 염려 없음	미끄러우나 넘어질 염려 없음	미끄러운 재질로 마감
▶ 1.1.2.2 바닥면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게		보도블럭, 아스팔트 등 2cm이하로 틈새없이 평탄하게	보도블럭, 아스팔트 등 2cm이하이며 평탄하지 않거나	자갈 및 모래 등으로 틈새가 ...

- o 피신청기관은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201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고서를 통계형태\*로 공개함(<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400>)
- \* 편의시설종류별, 건축물유형별, 지역별, 시설주체별(공공시설/민간시설) 편의시설 설치현황 통계

##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o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를 의미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장애인등편의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DB화하여 파일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 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로 수집한 데이터로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제1호의 제외사유(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자료로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평등법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제1항및제3항에서는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의 공표와 관련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그 내용은 조사개요 및 방법,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정보를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주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붙임2-1 샘플파일의 항목 중, “시설주”, “연락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사건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
-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여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10.23.선고 2007두1798판결), 그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0.12.23.선고 2008두13101판결)
  - 또한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됨(제9조제1항제7호각목)
  - 이 사건 데이터와 관련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취지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장애인등편의법령에 따라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을 인터넷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내용은 시설물명칭 및 시설물 주소를 포함한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적정설치여부(적정/미흡/미설치)에 관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에 따른 통계자료로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계법은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라는 개념을 두고, 통계자료의 제공절차 및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통계법 제31조)
    -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함(제3조제4호)
    - \*\*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함(제3조제7호)
  - 해당 규정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31조제1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하며,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31조제2항및제3항)
- 이 사건 데이터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통계법 제3조제7호의 '행정자료'에 해당하고, 피신청기관이 주장하는 통계자료는 이러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면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 4. 조정내용

##### 가. 조정결정 사항

- o 피신청인은 다음의 190개 항목의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DB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382개 항목(컬럼)중 시설주 이름 및 연락처와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가능한 시설물과 관계없는 항목(192개)을 제외한 190개 항목

구분		항목명	항목수
제공 데이터*	기본 사항	문항수, 적정+미흡항목수, 적정항목수, 설치율, 적정설치율, 번호, 용도구분, 시설명, 주소(시도, 시군구, 새길주소, 기존주소), 최초건축허가일, 최초편의증진법적용일, 최종장애인등편의법적용일, 기타, 조사원비고란, 조사대상여부	18개
	평가 항목	매개시설(Q1_1_1_1~Q1_3_4_3) 41개, 내부시설(Q2_1_1_1~Q2_4_6_7) 78개, 위생시설(일반사항,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Q3_1_1_1~Q3_4_2_3) 53개	172개

- o 신청인은 상기 제공받은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신청목적\* 내에서만 이용하고 그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이용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가능한 시설물의 편의시설 정보를 IT서비스로 개발·제공

- 아울러,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시점과 서비스 제공시점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신청인은 서비스 제공시 피신청인의 데이터 수집시기와 함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이고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인터넷에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자료로써 통계법상 보호를 받는 통계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 \* DB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382개 항목(컬럼)중 시설주 이름 및 연락처와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가능한 시설물과 관계없는 항목(192개) 제외
  -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공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또한, 이 사건 데이터가 통계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더라도 통계법 제31조제3항이 법인, 단체 등이 식별되는 자료를 제공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데이터 수집 근거법령인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실태조사의 목적이 시설주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개별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이 사건 조정은 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신청목적\*을 고려한 것이므로, 신청인은 신청목적 내에서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도록 이용조건에 제시하고, 이용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함을 명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가능한 시설물의 편의시설 정보를 IT서비스로 개발·제공

- 아울러, 이 사건 데이터는 2018년도 실태조사 데이터임에 따라, 신청인이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시점과의 차이로 인해 향후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수집시기와 함께 출처를 명시하여 고지해야 할 것이다.

## 5. 조정결과

- o 조정성립